

CEO Report

보험산업 경쟁력
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

2015. 10

김석영

CEO Report 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
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.

CONTENTS

I. 기본 방향	1
II. 주요 내용	2
III.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	3
부 록	4
I. 검토 배경	4
II. 보험산업의 현주소	5
III. 보험회사 경쟁력 제고 추진 전략	7
IV.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	18

I. 기본 방향)

- 그동안 상품개발, 판매, 자산운용 등에 있어 선생님식의 광범위한 사전적 규제가 존재하여 ① 상품개발 자율성 부족, ② 상품판매 과당경쟁, ③ 자산운용 과잉규제, ④ 보험산업 위상저하, ⑤ 환경 변화 대응 노력 미흡 등 부작용이 발생
- 금융당국은 현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함.
- 이를 위해 보험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

〈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개요〉



1)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.

Ⅱ. 주요 내용

- **상품개발 사후보고제도로의 전환으로 상품개발 자율성 향상 전망**
 - 부실상품에 대한 과징금 엄중부과로 상품개발 및 상품변경권고권 발동 신중 예상
 -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은 재무건전성 및 소비자보호로 전환
- **위험률, 예정이율, 표준이율 등 보험료에 대한 규제 폐지로 다양한 상품개발 촉발**
 - 안전할증 한도 철폐로 장기보장형 상품 활성화 기대
 -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의 전환 가속화
 - 2020년 IFRS 2단계 도입 시 표준이율 유명무실
- **표준약관 폐지, 가격자율화 등에 따라 소비자 보호 부각**
 - 소비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시장모니터링 기능 강화
 - 특히, 상품개발 사전신고 폐지와 더불어 불완전 판매, 부실상품 등에 대한 금융당국 시장 모니터링 기능 강화 예상
 -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가격비교·공시 기능 강화

Ⅲ.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

■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보험시장은 가격과 서비스를 통한 치열한 경쟁시대 진입 예상

- 가격경쟁과 고객 서비스 향상으로 소비자 편익도모 및 신뢰회복
- IFRS4 2단계 도입과 함께 자사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 부재 시 낙오하는 회사 발생 전망
- 특히, 중·소형사와 대형사의 경쟁력 격차 축소를 위한 M&A 시장 활성화 전망
 - 대형사·중소형사의 시장지배 질서 재편 예상

■ 보험회사는 규제 회복이 없도록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신뢰 구축에 최선의 노력 필요

- 지나친 가격인상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신뢰상실에 주의
- 판매채널 교육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 해소 노력 필요

※ 10월 중 입법예고하여 2016년 초부터 즉시 시행(다만, 일부 과제는 순차적 추진)

I. 검토 배경

-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규모(수입보험료 기준) **세계 8위로 도약**
 - '14년 말 현재 국내 금융산업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기준 19.8%, 종사자 기준 55.1%
- 그러나 **양적 성장에 치중함에 따라 저성장·저금리·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성장동력도 약화됨.**
 - (감독규제) 다른 산업에 비해 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가 많아 시장의 창의성·역동성 부족
 - (보험회사) 양적 경쟁에만 몰두하고 상품개발 및 자산·부채관리 능력 부족으로 핵심 경쟁력 취약
 - (소비자)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민원 증가 및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
- 금융당국은 현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을 위한 **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함.**
 - 보험산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보다 **가장 혁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**



II. 보험산업의 현주소

- **상품개발, 판매, 자산운용 등에 있어 선생님식의 광범위한 사전적 규제가 존재하여 보험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**
 -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, 보험회사는 중장기 경쟁력이 부재하여 환경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상황

- **상품제조 단계 : 자율성·다양성 부재**
 - 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 및 업계의 현실안주 관행 등으로 상품 자율성이 취약하여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상품공급 부재
 - 명시적·비명시적인 규제로 가치중심의 상품전략에 어려움 상존
 -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로 보험사 간 차별성 없는 상품만 시장에 공급

- **상품판매 단계 : 과당경쟁 및 영업질서 문란**
 - 실적 위주 과당경쟁은 불완전판매, 철세설계사 문제 등을 야기하여 보험 신뢰도 저하로 귀결
 - 핀테크 시대에도 여전히 고비용의 대면판매에 치중
 - 온라인 특성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절차, 상품 간 비교공시 취약 등 핀테크 시대에 부응한 판매 인프라 미흡

■ 자산운용 단계 : 과잉규제 및 자체 경쟁력 취약

- 각종 자산운용 관련 사전적 규제가 상존하고, 보험회사 스스로의 보험 부채 특성에 맞는 **효과적·선진적 자산운용이 어려움.**
- 자산운용 전문인력 부족으로 **자산운용 역량도 취약**
 - 채권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수익률 제고에 한계

■ 국민경제에서의 보험산업 위상 저하

-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**부정적 인식 확산**
- 가입절차 복잡성, 판매과정 설명 부족,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 증가 등으로 소비자 불신 및 보험민원이 증가

■ 중장기 경쟁력 훼손 : 환경 변화 대응노력 미흡

- **고령화·겸업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부진**
- 2020년 시행예정인 **IFRS4 2단계에 대한 준비 소홀**
 - IFRS4 2단계는 **보험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변혁**

III. 보험회사 경쟁력 제고 추진 전략

1. 기본 방향

- 보험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**글로벌 수준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**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
 - 판매채널을 통한 양적경쟁보다는 **새로운 보험상품 서비스 제공**을 통한 **질적 경쟁 유도**
 - 상품개발·판매·자산운용 등과 관련된 규제는 **최대한 폐지**하되 **소비자 보호기능은 한층 강화**
- 이를 위해 **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**을 마련하여 '17년 말까지 **체계적·단계적**으로 추진
 -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고 **새롭고 다양한 상품·가격 출현**을 유도하여 **국민적 신뢰 회복**

〈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개요〉



2. 주요내용

가.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

1) 문제점

- 현재 보험상품 개발 시 사전신고제도가 있으나 **사실상 사전인가제로 운영됨.**
 - 현행 법규상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성격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신고 후 판매(‘사전신고’)하거나 또는 판매 후 사후보고(‘제출’)함.
- 보험회사들은 **새로운 상품의 실질적 사전인가 취득 어려움**으로 신상품 개발보다는 **이미 판매중인 상품을 일부 변형하여 판매하는데 주력**
 - 시장내 상품이 **천편일률적**이고, 이에 따라 **채널경쟁만 치열해져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원인 제공**

2) 개선방안

- 원칙적으로 현행 **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**
 - 향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의 적용·심사기준 명확화
 -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제 유지
-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**표준약관제도 전면 재정비**
 -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규율하는 **표준약관(시행세칙)**을 폐지하고, 소비자 보호 등 규제 필요사항은 **약관준수 사항** 등으로 **규범화(규정·시행세칙)**

- 다만, 실손의료·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표준약관 내용을 최소화하여 유지하되,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**표준약관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**

- **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신고 기준 등의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 삭제**
 - (예) 암 90일, 치매 2년 등 위험보장 면책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

- **보험 자율화 과정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실상품 판매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대폭 강화**
 - 상품설계기준을 위배하여 판매된 상품에 대한 **금융당국의 변경권고권 발동 시, 사유공개 및 과징금 반드시 엄중 부과**
 -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품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
 -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애매모호한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구체화하고 하위규정의 위임근거 마련

 - 사전신고 폐지에 따라 공보험 및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(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)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
 - 각계 전문가·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『(가칭) 상품심의위원회(협회)』를 설치·운영

- **신상품 개발 시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을 최대 12개월로 확대**
 - 복제를 통한 무임승차 방지 및 신상품 개발유인 강화

- (기대효과) 위험보장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시키는 질적 경쟁 촉진 전망

나.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

1) 문제점

- 보험료 자율화조치에 따라 **외건상 보험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현실적으로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각종 규제 존속**
 - (위험률 조정) 3년(실손 1년)마다 위험률 조정 시 $\pm 25\%$ 범위 내에서만 조정
 - (위험률 안전할증) 통계적 위험률 산출 시 안전할증 30%까지만 허용, 사후 정산 시 50%까지 허용
 - (보험료 할인율·표준이율)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하는 보험료 할인율을 금감원이 정하는 표준이율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
 - (공시이율) 공시기준이율의 $\pm 20\%$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
-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매년 동일시점에 동일수준·동일폭으로 조정하면서 **상품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게 되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**

2) 개선방안

- 위험요율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, 이를 통한 가격통제 메커니즘 재정비
 - 보험회사 자체 경험위험률 상시 조정 가능하도록 허용

-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(직전대비 $\pm 25\%$) 폐지
 - 다만, 손해율이 높아 규제 완화 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
 -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에 적용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“(현행)30% → (16년)50% → (17년)폐지”로 단계적으로 정비 및 사후정산 조건 폐지
-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이자율(할인율)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
- 표준이율 산출제도를 폐지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 결정
 -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“(현행)20% → (16년)30% → (17년)폐지”로 단계적으로 정비
- 가격규제 일괄 재정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보완방안 병행 추진
-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여 파급효과가 큰 실손의료보험 등 일부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는 2년 이상 걸쳐 단계적·제한적으로 추진
 - 금년 11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가격비교·공시 대폭 활성화
 - 내년부터 온라인 슈퍼마켓이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·공시정보를 인터넷 포털 및 가격비교 사이트에 전면 개방
 - 비교·공시항목으로 보험상품 보장범위지수²⁾를 신규 도입하여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표준화·규격화된 전용상품 개발 유도
 - 다른 채널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상품의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여 온라인 슈퍼마켓 활성화 뒷받침

2) 표준보장범위 대비 보험상품의 보장범위, 보장기간 등의 비율을 지수화.

- 보험료 자율화에 따른 가격 덤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비하여 **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 강화**
 - 내년부터 본격화될 IFRS4 2단계 도입 과정에서 부채시가평가(LAT)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, RBC제도의 정교화 추진
- (기대효과) 보험료 결정에 대한 **직·간접적인 통제장치를 완화**하여 꼭 필요한 위험 보장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**경쟁하는 시장풍토 조성**

다.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

1) 문제점

- 외국환·파생상품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규제가 **효과적인 자산 운용·해외투자 등에 걸림돌로 작용**
- 투자가능 외화자산범위 제한, 외국환거래기준상 불명확성 및 외환·파생상품의 열거주의 규제 등도 **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저해**
-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후순위채권에 비해 자본성이 우수함에도 동일수준의 발행요건이 요구되는등 **자본조달 규제 상존**

2) 개선방안

-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**사전적·직접적 통제** → **사후적·간접적 감독 방식**으로 전환

- 현재 사전적으로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, RBC를 통한 사후감독 강화 체계로 전환
 -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정비
 -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
- **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,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보험회사의 다양한 자본 조달 방식 허용**
-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고, RBC 지급여력 산정 시 기본자본 인정비율도 현행 15%보다 상향된 25% 적용
 - 향후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, 보험회사의 후순위채권 발행 허용
- **자산운용 자율성 제고와 병행하여, 자산운용상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**
- IFRS4 2단계 도입을 대비하여 주요국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국내도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제도정비 추진
 - '16년 상반기 중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, 이에 상응하여 보험회사의 자율적 자본확충 노력 강화 유도
- **(기대효과)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기대**

라. 판매채널 전면 혁신

1) 문제점

- 법인보험대리점(GA)의 긍정적 효과와 병행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등 부작용 발생

2) 개선방안

- 판매규율 재정립을 통해 일부 보험대리점·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·불공정 행위 억제
- 대형 법인보험대리점(GA)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을 통해 상품판매에 대한 권한·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·감독 강화
 - 민관합동TF를 운영하여 구체적 입법화 방안 마련 추진
- 보험상품 판매 시 판매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기존계약 부당 해지(승환) 시 과징금·과태료 등 금전제재 강화
- (기대효과) 과도한 판매채널 경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당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규율 확립

마.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

1) 문제점

- 가입단계별 지나치게 복잡한 안내자료 제공 등으로 계약자 이해도가 오히려 저하
-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충분한 상품공급이 미흡하고, 실손 의료·자동차보험 등의 안정적 기반 위협

2) 개선방안

- 핀테크 시대에 부응하여 종전 **아날로그적** 규제를 일체 정비
 - **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 재정비**
 - 보험업법령상 잔존하는 **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**
 - 상품안내자료의 과도한 **확인·서명방식을 대폭 간소화**하되, **해피콜제도³⁾**는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
 - **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도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접목을 적극 유도**
 - **현행 병원·소비자·보험회사 간 아날로그 방식의 보험금 청구·지급 절차를 온라인·모바일화 유도(핀테크 활용)**

3)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 대해 청약 후 10일 이내 전화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사업비, 해약환급금 등 핵심사항에 대해 재확인하는 제도.

■ 소득수준 제고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다양한 위험보장수요가 나타나는 만큼, 이에 걸맞은 **종합 리스크 관리역량 확충 유도**

-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회사 신규진입 허용 등을 통해 장기저축성 상품 위주의 성장전략 탈피 유도
- 기업성 보험에 대해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보험회사 자체 보험 요율 산출 허용
- 기업성 보험의 자체요율·참조요율·협의요율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

■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·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험 생태계 조성

- 실손의료보험 가입·지급 과정에서 의료과잉·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
 -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
 -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『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』를 법상 기구화하는 방안 검토
 - 의료 과잉공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입원일당 가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
-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 방안 검토

■ (기대효과)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위험을 안정적·효율적으로 보장

3. 향후 추진계획

- 개혁과제 중 시행령/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는 10월 중 입법예고하여 2016년 1/4분기부터 속도감있게 시행
 - 다만,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과제들은 정교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·단계적으로 추진
 - 이와 함께 법 개정 필요과제는 추가검토를 거쳐 2016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고 20대 국회에 제출·통과 추진

- 『로드맵』의 성공적 추진 시 우리 보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유사한 상품의 판매채널을 통한 “양적 경쟁” →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·서비스를 통한 “질적 경쟁”으로 전환
 - 기존 규제체계하에 안주 → 시장 변화와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“무한경쟁 체제”로 진입
 - 종전 연고 중심의 상품구매 → 다양한 상품·서비스 출현에 따라 소비자들도 꼼꼼하고 정확한 “상품 비교·선택” 노력 필요
 - 사전적인 직접 통제 →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면서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는 감독방식으로 변화

IV.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

1. 정책당국

-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독정책의 일대 전환 예정
 - 사후보고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불완전판매, 부실상품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예상
 - 표준약관 폐지 등 자율성 강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대책 강구
 - 상품변경권고 발동 신중 및 발동 시 무거운 과징금 부과
 - 상품변경권고로 인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상품설계 및 상품변경 권고권 발동 신중
 - 무한경쟁으로 인한 회사의 퇴출 및 M&A 시장 활성화

2. 보험회사

-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보험시장은 가격과 서비스를 통한 치열한 경쟁시대 진입 예상
 - 경쟁으로 보험료 상승이 억제되고 고객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
 - 보험회사는 자사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개발 및 판매 전략 필요
 - 중·소형사는 대형사와의 경쟁을 위해 전문화 필수

- 보험회사는 독자적인 보험요율 및 상품개발을 위해 **전문인력 확보 경쟁 예상**
-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비한 **자본확충 필요**
- IFRS4 2단계 도입과 함께 상품개발 및 판매의 무한 경쟁에서 **낙오하는 회사 발생 전망**
- 특히, **중·소형사는** 대형사와의 경쟁력 격차 축소를 위해 **M&A 적극 검토**

저자약력

■ 김 석 영

University of Arizona 수학 박사
보험연구원 연구위원(동향분석실)
(E-mail : skim@kiri.or.kr)

CEO Report 2015-03

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

발행일	2015년 10월
발행인	강 호
발행처	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
인쇄소	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- 2999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
(☎3775-9029)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

